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49

발의연월일: 2022. 7. 25.

발 의 자: 어기구 · 김주영 · 송갑석

위성곤 • 윤재갑 • 이개호

이성만 • 이형석 • 인재근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맹견이 아닌 대형견 등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국민적 우려가 큼.

현행법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에 대하여 형벌이나 과 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사후적인 제재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이에 맹견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감 강화를 위하여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물림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0조).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자"를 "자, 제9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의 죄를 지은 자"로, ""동물학대행위자"라"를 ""동물학대행위자등"이라"로, "200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0시간"으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을 "명령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학대행위자"를 "동물학대행위자등"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물학대행위자"를 "동물학대행위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수명령"을 "이수명령의 내용"으로, "내용으로 한다"를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 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

- 2. 제9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의 죄를 지은 자: 수강명령
- 1. 제1항제1호
 - 가.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 나.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다. 그 밖에 동물학대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제1항제2호
 - 가.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7조제1항 병과) ①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 | ---자. 제97조제1항제3호·제4호 학대행위자"라 한다)에게 유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죄를 지은 자-----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 "동물학대행위자등"이라-----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 -----다음 각 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 호의 구분에 따라 200시간----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 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 령을-----. 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 다. <신 설> 1.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수강 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

<신 설>

- ② <u>동물학대행위자</u>에게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u>동물학대행위자</u>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있다.
- ④・⑤ (생략)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내용으로 한다.
-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
 제9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의
죄를 지은 자: 수강명령
② 동물학대행위자등
③ <u>동물학대행위자등</u>
④·⑤ (현행과 같음)
6
<u>이수명령의 내용</u>
<u>구분에 따른다</u> .
1. 제1항제1호
<u>가.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u>
<u>담</u>
나.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u>사항</u>	교육
	다. 그 밖에 동물학대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2. 제1항제2호
	가.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개물림 관련 재
	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u>사항</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